

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6. 13

나. 제안자 : 김삼중, 전덕생 의원 외 14명

다. 회부일자 : 2001. 6. 13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87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(2001. 6. 14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전덕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부천시주차장조례의 제17조 별표2 중 제4호의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주택가 주변의 증가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없는 바, 이를 해소할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
- 동 설치기준을 다소 강화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실정과 공영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가능한 주택가의 주차면수는 원인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다소 해소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세대당 0.7대 이상으로 조정(제17조 별표2의 제4호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생략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- 없음

나. 반대토론

- 없음

5. 심사결과

-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-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

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관련 제487호
의결년월일	2001. 6. 15 (제87회)

제안년월일 : 2001. 6. 13

제안자 : 김삼중, 전덕생 외 14인

□ 제안이유

- 부천시주차장조례의 제17조 별표 2중 제4호의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주택가 주변의 증가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없는 바, 이를 해소할 주

차면수를 확보하기 어려우므로

- 동 설치기준을 다소 강화하여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실정과 공영 주차시설이 부족한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주택가의 주차면수는 원인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다소 해소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세대당 0.7대 이상으로 조정(제17조 별표2의 제4호)

개정조례안 : 불임

예산수반사항 해당사항 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2 중 시설물란 제4호의 설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시 설 물	설 치 기 준
4.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	시설면적 87㎡ 초과 134㎡ 이하는 1대, 시설면적 134㎡ 초과인 경우는 1대에 134㎡를 초과하는 87㎡당 1대를 더한 대수. 다만, 주차대수가 세대당 0.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0.7대 이상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[별표2]

부설주차장설치기준(제17조 관련)

현 행		개 정 안	
시 설 물	설 치 기 준	시 설 물	설 치 기 준
1~3	(생략)	1~3	(현행과 같음)
4. 단독주택, 다세대	시설면적 130㎡ 초과	4. 단독주택, 다세대	시설면적 87㎡ 초과

<p>주택</p>	<p>200㎡ 이하는 1대, 시설면적 200㎡를 초 과하는 90㎡당 1대를 더한 대수</p>	<p>주택</p>	<p>134㎡ 이하는 1대, 시설면적 134㎡를 초 과하는 87㎡당 1대를 더한 대수. 다만, 주 차대수가 세대당 0.7 대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세대당 0.7대 이상</p>
<p>5.~7.</p>	<p>(생략)</p>	<p>5.~7.</p>	<p>(현행과 같음)</p>